

파이데이아 칼리지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학칙 제2조 파이데이아 칼리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파이데이아 칼리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파이데이아 칼리지 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또는 파이데이아 칼리지 학장이 되며,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파이데이아 칼리지 프로그램의 개발·편성
2. 파이데이아 칼리지 프로그램 관련 예산 수립
3. 파이데이아 칼리지 프로그램의 운영
4. 파이데이아 칼리지 교과목 운영
5. 파이데이아 칼리지 프로그램의 홍보 및 평가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 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·검토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파이데이아 칼리지 학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한다.

파이데이아 칼리지 운영위원회 규정(8-34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